

서울특별시 성북구 U-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
구축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도시안전과)

의안번호	제186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(2023. 10. 5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U-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통합적·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, 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을 시작함에 있어, 관내 유관기관별 협조 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개정 및 제명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)
- 나. 관제요원 근무 내용의 명문화(안 제13조)
- 다. 폐쇄회로텔레비전(CCTV: Closed Circuit Television) 안전망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 조문 신설(안 제2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5제2항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예고기간 : 2023. 8. 17. ~ 2023. 9. 6. (20일간) : 의견없음

4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통합적·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, 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을 시작함에 있어, 관내 유관 기관별 협조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성북구 통합관제센터¹⁾ 현황

- 개소일 : 2013. 1. 18.(사업기간 2012. 7. 17 ~ 2012. 12. 30.)
- 사업예산 : 16억1,700만원(국비 5억1백만원, 시비 1억6,600만원,
구비 9억5,000만원)
- 구축장소 : 구청 4층(면적 230m²)
- CCTV연동현황 : 1,391개소 4,033대

(2023. 7. 31. 기준)

목 적	합 계	방 법	어린이 안 전	공 원	공 화 장 설	초·중·고 교 내	교통정보 수 집	주 정 차 단 속	재 난 재 해
개소 (대수)	1,391	967 (2,983)	164 (450)	110 (260)	15 (38)	2 (10)	17 (18)	79 (235)	37 (39)
예산부 서	(4,033)	도시안전과	교통안전과	공원녹지과	창의문화과	교육청	도시계획과	교통지도과	치수과
관 제		도시안전과						교통지도과	치수과

- 근무인원 : 23명(도시안전과 2, 경찰 4, 모니터링요원 13, 불법주정

1) 서울특별시 성북구 U-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조례

제9조(통합관제센터의 구축·운영) ① 구청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으로 하며,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CCTV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,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
차 단속 1, 유지보수업체 3.

- 관제센터 운영 효과 : 설치 전·후 5대 범죄 발생 현황 비교

구분	살인	강도	강간	절도	폭력
증감율(%)	-63.6%	-88.5%	-3.7%	-47.9%	-37.4%
‘10~ ‘12년 평균(건수)	11	26	161	2,028	2,316
‘18~ ‘22년 평균(건수)	4	3	155	1,056	1,449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U-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조례”
를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
치·운영 조례”로 제명을 변경하고, 그에 따라 조례 목적, 정의 ,
적용범위 항목을 일부 개정하였으며,

- 제2조(정의) 제1호 : “CCTV”를 “영상정보처리기기”로 변경하
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시켜 범위를 폭 넓
게 규정함.

CCTV→영상정보처리기기, U-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→통합관제센터

- 안 제13조 관제 전담요원을 관제요원으로 변경하고, 2024년 공무원
전환(13명)을 앞두고 관제요원 근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.

- 안 제27조(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)를 신설하여 서울특
별시 등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관내 경찰서 및 소방
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
위한 기반을 마련하고, 관내 경찰서, 소방서 등 CCTV 안전망 통합
플랫폼 연계 조문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
는 것으로 검토됨.